

	실병관리청	보	도 참	밝고	사 료
배 포 일	2021. 2. 23.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저	화	043-719-7430
담 당 자	최 상 미,	최 은 경	- 건	조[	043-719-93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0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7,681명(해외유입 6,94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53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5,733건(확진자 4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9,268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7명으로 총 78,394명(89.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1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8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73명(치명률 1.79%)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2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30	118	12	7	12	6	0	1	1	122	14	4	8	7	6	7	5	0
누계	80,741	26,685	3,035	8,421	4,107	1,870	1,125	912	191	21,345	1,765	1,634	2,246	1,030	769	3,061	2,017	528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2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7 11	★나게			(추정)유입	╏국가 <sup>*</sup>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del>중국</del>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7	0	11	6	8	2	0	5	22	10	17
누계	6.040	40	3,091	1,211	2,258	317	23	2,936	4,004	3,764	3,176
〒៕	6,940	(0.6%)	(44.6%)	(17.4%)	(32.5%)	(4.6%)	(0.3%)	(42.3%)	(57.7%)	(54.2%)	(45.8%)

<sup>\*</sup> 아시아(중국 외) : 인도 2명(2명),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2명(1명), 일본 1명, 싱가폴 1명 (1명), 유럽 : 프랑스 3명(2명), 폴란드 1명, 체코 1명, 루마니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5명), 아프리카 : 리비아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 . –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22.(월) 0시 기준	77,887	7,875	146	1,562
2.23.(화) 0시 기준	78,394	7,714	148	1,573
변동	(+)507	(-)161	(+)2	(+)11

<sup>\* 2</sup>월 22일 0시부터 2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위중증: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sup>※</sup>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 2월 2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51.9명), 수도권에서 252명(76.4%) 비수도권에서는 78명 (23.6%)이 발생하였다.

(주간: 2.17일~2.23일, 단위: 명)

						•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23일(0시 기준)	330	252	13	19	14	18	14	-
주간 일 평균	451.9	336.7	37.9	18.4	22.1	27.3	7.6	1.9
주간 총 확진자 수	3,163	2,357	265	129	155	191	53	13

## ○ 수도권

(주간: 2.17일~2.23일, 단위: 명)

구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415	432	396	315	311	236	252	336.7	2,357
서울	247	179	177	119	120	102	118	151.7	1,062
인천	21	16	37	35	21	18	12	22.9	160
경기	147	237	182	161	170	116	122	162.1	1,135

- (서울 마포구 직장 관련) 2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6), 가족 7명(+7)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7명\*이다.
  - \* (구분) 환자 80명(지표포함,+2), 종사자 37명, 보호자/가족 82명(+6), 간병인 17명(+1), 지인 9명, 기타 2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9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33명(지표포함, +4), 가족 및 지인 33명, 기타 13명(+4)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 \* (구분) 이용자 31명(지표포함, +3), 종사자 2명, 가족 12명(+1), 기타 17명(+2)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2명(지표포함), 환자 47명(+5), 가족 1명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헬스장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6	가족 6명(지표포함)
② 운동선수 관련	13(+2)	선수 12명(+2), 종사자 1명
③ 헬스장 관련	25(+13)	종사자 3명 , 이용자 16명(+9), 기타 6명(+4)

# ○ 충청권

(주간: 2.17일~2.23일, 단위: 명)

구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89	57	44	30	17	15	13	37.9	265
대전	7	12	4	2	-	2	-	3.9	27
세종	2	1	1	-	1	-	1	0.9	6
충북	6	16	18	16	6	7	4	10.4	73
충남	74	28	21	12	10	6	8	22.7	159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3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11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62명(+1)
- (충남 공주시 병원 관련) 2월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 (구분) 가족 5명(지표포함, +1), 간병인 5명, 환자 9명(+2)
- (충북 영동군 대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 (구분) 유학생 11명(지표포함 +1), 지인 1명(+1), 기타 1명(+1)









### ○ 호남권

(주간: 2.17일~2.23일, 단위: 명)

구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3	21	16	19	20	11	19	18.4	129
광주	2	12	3	1	5	4	6	4.7	33
전북	6	5	3	8	7	4	7	5.7	40
전남	15	4	10	10	8	3	6	8.0	56

- (전북 전주시 카페/PC방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카페 관련	4(+1)	방문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1명(+1)
② PC방 관련	7(+1)	종사자 1명, 방문자 6명(+1)

- (전북 완주군 자동차공장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자동차공장2 관련	12(+3)	종사자 10명(지표포함, +2), 가족 1명, 지인 1명(+1)
② 명절모임 관련	12(+3)	가족모임 5명, 지인 3명, 지인가족 1명, 기타 1명(+1), 음악학원 관련 2명(+2)

- (전남 무안군 가족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명절모임 관련	6	가족 6명(지표포함)
② 화장품판매 관련	9(+1)	종사자 4명, 이용자 3명(+1), 가족 2명
③ 완도 어린이집 관련	4(+4)	교사 2명(+2), 원생 2명(+2)

## ○ 경북권

(주간: 2.17일~2.23일, 단위: 명)

								1 - 1 - 11 -	<u> </u>
구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6	31	32	25	12	15	14	22.1	155
대구	12	9	10	9	6	4	7	8.1	57
경북	14	22	22	16	6	11	7	14.0	98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모임1 관련	13	가족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② 동호회 관련	20	회원 9명, 가족 3명, 지인 2명, 동료 2명, 기타 4명
③ 가족모임2 관련	8	가족 6명, 지인 2명
④ 가족모임3 관련	13(+5)	가족 6명, 지인 3명(+1), 기타 4명(+4)
⑤ 온천 관련	13	방문자 8명, 가족 2명, 동료 2명, 기타 1명

· (추정감염경로)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모임 및 온천 방문을 통한 전파









## ○ 경남권

(주간: 2.17일~2.23일, 단위: 명)

구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4	41	37	22	22	17	18	27.3	191
부산	18	28	16	14	11	12	12	15.9	111
울산	9	6	12	-	4	-	1	4.6	32
경남	7	7	9	8	7	5	5	6.9	48

- (부산 영도구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 (구분) 보호자 1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간병인 1명, 환자 4명, 가족 5명(+5)
-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관련) 2월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장례식장 관련	19(+1)	방문자 4명(지표포함), 동료 6명, 가족 2명, 기타 7명(+1)
② 골프연습장 관련	15	이용객 3명, 가족 5명, 동료 5명, 기타 2명
③ 명절가족모임1 관련	4	가족 4명
④ 명절가족모임2 관련	3	가족 3명

- \* **(추정감염경로)** 장례식장 → 직장 → 골프연습장 → 가정(설 가족모임)
- (경남/경기 명절모임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3명, 기타 1명 / (지역) 경남 5명, 경기 2명
  - \* **(추정감염경로)** 가정(설 가족모임) → 지인모임 → 가족

# ○ 강원권

(주간: 2.17일~2.23일, 단위: 명)

구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3	3	5	3	6	19	14	7.6	53

- (강원 정선군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 (구분) 교인 12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3명, 기타 1명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감염사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최근 2주간(2.9일~2.22일) 집단발생 71건 중 사업장에서 총 14건 (확진자 513명)이 발생했으며, 충남·경기지역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2.23일 0시 기준)
  - 대표적 사례로,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사례 확진자 총 179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123명(68.7%, 중국 등 19개 국적)이었으며, 가족 및 지인을 중심으로 총 46명의 추가전파가 확인되었다.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사례에서는 확진자 총 173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26명(15.0%, 네팔 등 9개 국적)이 확진되었으며, 총 11명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

업체명	계		종사자	추가전파		
합세정	/1	내국인	외국인	수(건)	구성(명)	
경기 남양주시 대동프라스틱	179	10	123 (68.7%, 19개국)	46	가족 23 지인 10 기타 13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173	80	26 (15.0%, 9개국)	69	가족 61 지인 8	

- 주요 위험요인은 <sup>①</sup> 공동 기숙생활 <sup>②</sup>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 환경 및 공용공간, <sup>③</sup>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미흡 등 이었다.
- 방역당국에서는 산업체에서 감염 예방 및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 법무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선제적인 검사<sup>\*</sup>를 진행하고 있다.
  -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외국인 익명검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검사 유도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교 및 학생은 '학교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다음 주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 학교(급)가 우선 등교를 시작함에 따라, 학생·교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등교 전 가정에서 증상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APP)\*"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다.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유초중고·대학·교육행정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사전에 스스로 건강상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
    - 둘째, 증상이 있으면 등원·등교하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는다.
    - 셋째, 학교 내에서는 △일과시간 마스크 항상 착용, △불필요한 이동 자제(교육활동 및 화장실 외), △발열검사 및 실내 환기·소독, △학생·교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한다.
  - **대학교**의 경우 **개강 이후 밀집도 증가** 및 **행사·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기숙사·구내식당·강의실 등에서는 △밀집도 완화 및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 특히, 동아리·신입생 환영회·각종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아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활동 및 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추가 개정한다(금일 중 배포 예정)고 밝혔다.
  - ○「시험 방역관리 안내」는 지난 4월부터 국가시험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함께 마련·운영해왔으며,
    - 시험장 방역 조치 및 시험관리·운영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환경 위생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사전 준비사항과 시험 당일·종료 후, 면접시험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조치사항,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각 부처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 \* 제10회 변호사 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금지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 결정 선고('21.1.4.)
    -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가능 장소 및 이송방법,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의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다.

## 【 확진자 시험장 운영방안 】

- (대상) 확진자 수험생이 응시 가능한 <u>국가시험</u>
  - \* 확진자 응시 기회 허용 여부는 국가시험 주관 부처에서 결정
- (시험장) 지자체가 확진자 시험 응시가능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을 지정
- (시험 주관부처) 시험 시작 최소 2주전, 지자체·중수본·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 요청
- (자택 대기중 환자 시험장 배정) 확진 수험생이 본인이 응시지임을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담당자가 시·도 병상 배정팀에 대상자 알림 ⇒ 시·도 병상 배정팀이 시험 응시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수험생 배정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설연휴·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설 연휴 기간에 <sup>△</sup>고향 및 타지역 방문, <sup>△</sup>가족·친지·지인 모임 참석, <sup>△</sup>3밀 환경(밀집, 밀접, 밀폐) 장소에 머물렀던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받기
    - 둘째, 앞으로 한 주 동안 모임·약속 등 자제하기
    - 셋째,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 준수하기
  - 아울러,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과 3월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번 더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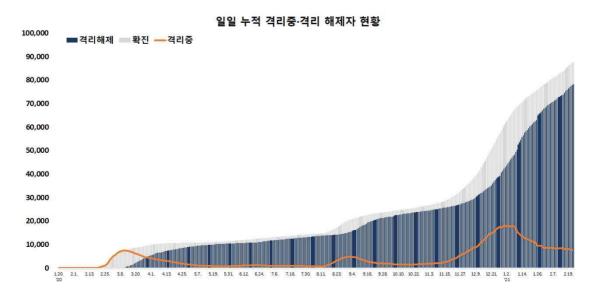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① 일일 확진자 현황 (2.23. 0시 기준, 87,681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확진자	결과 <sup>(</sup> 격리해제	양성 격리 중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신사	격디애세	역미 중	사망							
2.22.(월) 0시 기준	6,429,144	87,324	77,887	7,875	1,562	72,461	6,269,359					
2.23.(화) 0시 기준	6,472,679	87,681	78,394	7,714	1,573	74,065	6,310,933					
변동	+43,535	+357	+507	-161	+11	+1,604	+41,574					

- \* 2월 22일 0시부터 2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2.23. 0시 기준, 87,68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TICH	금일	신규	히지다니게	(0/)	인구10만명당							
지역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누계	(%)	발생률 <sup>*</sup>							
서울	118	8	27,592	(31.47)	283.47							
부산	12	0	3,167	(3.61)	92.82							
대구	7	3	8,568	(9.77)	351.65							
인천	12	2	4,336	(4.95)	146.68							
광주	6	1	1,997	(2.28)	137.09							
대전	0	1	1,179	(1.34)	79.98							
울산	1	1	1,001	(1.14)	87.27							
세종	1	0	216	(0.25)	63.10							
경기	122	5	22,821	(26.03)	172.23							
강원	14	0	1,837	(2.10)	119.24							
충북	4	0	1,723	(1.97)	107.73							
충남	8	0	2,402	(2.74)	113.17							
전북	7	0	1,135	(1.29)	62.46							
전남	6	0	837	(0.95)	44.89							
경북	7	1	3,209	(3.66)	120.53							
경남	5	0	2,164	(2.47)	64.38							
제주	0	0	561	(0.64)	83.64							
검역	0	5	2,936	(3.35)	_							
총합계	330	27	87,681	(100)	169.11							

<sup>\*</sup>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sup>\*\*</sup>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하게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구 분	합 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714	3,246	289	116	275	66	47	52	14	1,983	97	120	317	68	76	142	87	24	695
격리해제	78,394	23,975	2,774	8,239	4,009	1,911	1,117	912	201	20,358	1,699	1,545	2,050	1,013	753	2,997	2,067	536	2,238
사망	1,573	371	104	213	52	20	15	37	1	480	41	58	35	54	8	70	10	1	3
합 계	87,681	27,592	3,167	8,568	4,336	1,997	1,179	1,001	216	22,821	1,837	1,723	2,402	1,135	837	3,209	2,164	561	2,936

<sup>\* 2</sup>월 22일 0시부터 2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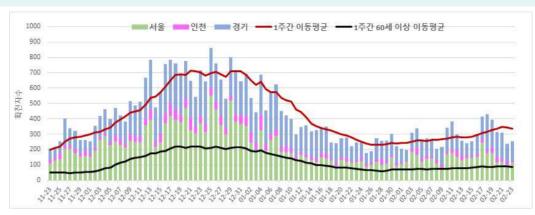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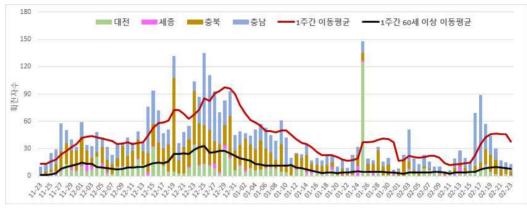


###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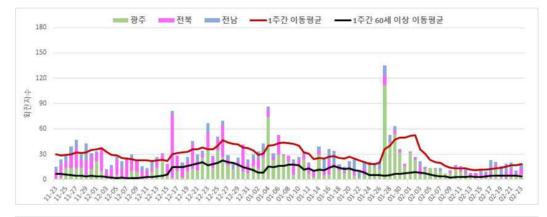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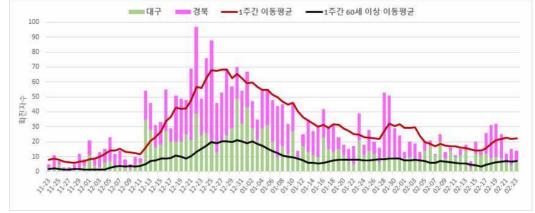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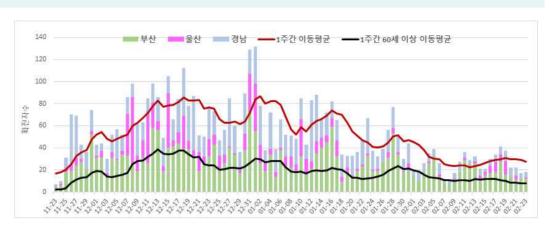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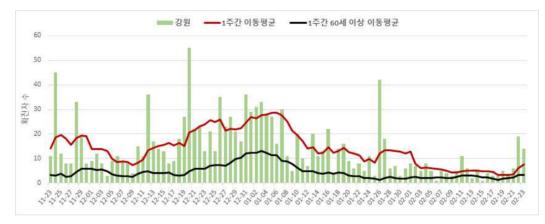


###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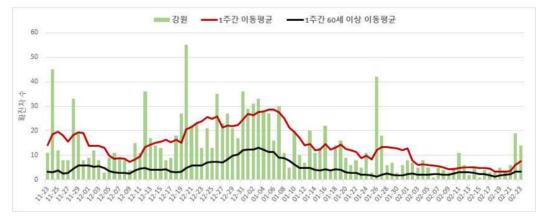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23. 0시 기준, 87,681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7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57	(100)	87,681	(100)	169.11					
 성별	남성	192	(53.78)	43,226	(49.30)	167.14					
O Z	여성	165	(46.22)	44,455	(50.70)	171.08					
	80세 이상	16	(4.48)	4,312	(4.92)	227.04					
	70-79	18	(5.04)	6,687	(7.63)	185.38					
	60-69	55	(15.41)	13,754	(15.69)	216.79					
	50-59	63	(17.65)	16,333	(18.63)	188.45					
연령	40-49	47	(13.17)	12,551	(14.31)	149.61					
	30-39	58	(16.25)	11,391	(12.99)	161.69					
	20-29	58	(16.25)	13,240	(15.10)	194.52					
	10-19	22	(6.16)	5,883	(6.71)	119.08					
	0-9	20	(5.60)	3,530	(4.03)	85.09					

<sup>\*</sup>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23.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7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1	(100)	1,573	(100)	1.79					
 성별	남성	5	(45.45)	782	(49.71)	1.81					
o ≥	여성	6	(54.55)	791	(50.29)	1.78					
	80세 이상	6	(54.55)	891	(56.64)	20.66					
	70-79	3	(27.27)	430	(27.34)	6.43					
	60-69	2	(18.18)	182	(11.57)	1.32					
	50-59	0	(0.00)	51	(3.24)	0.31					
연령	40-49	0	(0.00)	12	(0.76)	0.10					
	30-39	0	(0.00)	6	(0.38)	0.05					
	20-29	0	(0.00)	1	(0.06)	0.01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sup>\*</sup>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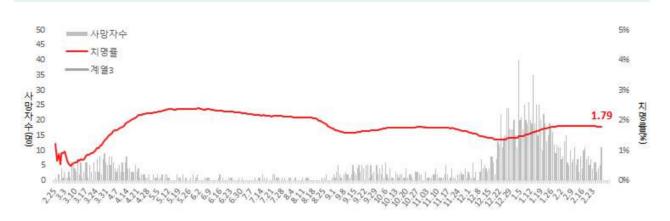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 일별 사망자 현황 >



### < 위중증 현황 >

구분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계 184 170 161 157 156 156 166 169 161 153 156 155 146 148

구분	위중증	(	%	)
계	148	(	100.0	)
80세 이상	32	(	21.6	)
70-79세	55	(	37.2	)
60-69세	45	(	30.4	)
50-59세	14	(	9.5	)
40-49세	1	(	0.7	)
30-39세	1	(	0.7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sup>\*</sup> 위중증: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C(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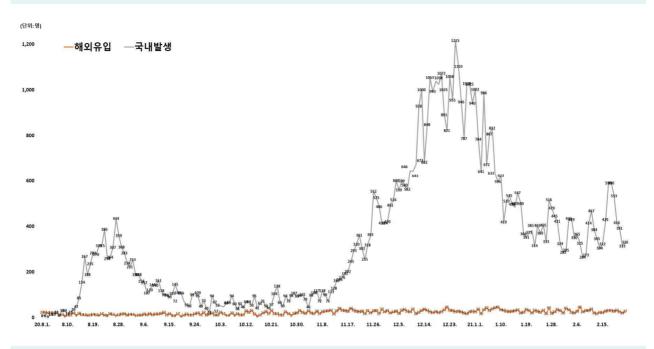






# **⑤ 감염경로**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 최근 2주간 ('21.2.10일 0시~'21.2.23일 0시까지 신고된 6,195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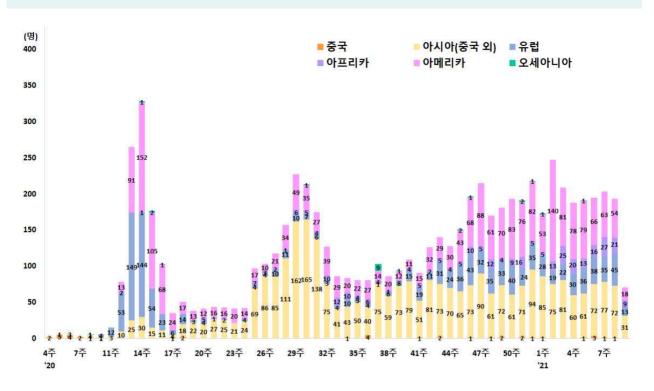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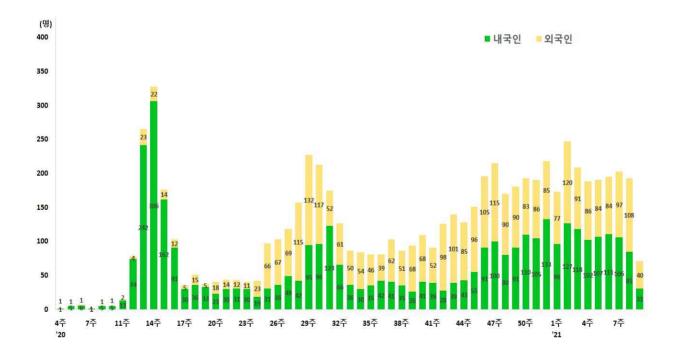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1-0-1	<b>확진환자</b> (단위: 명, %) 집단발생 관련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선천지 관련	정 <b>관년</b>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sup>*</sup>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27,592	907	10,302	8	10,200	94	9,063	7,320	126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3,167	132	1,992	12	1,924	56	613	430	12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b>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b>
대구	8,568	147	6,325	4,512	1,806	7	1,154	942	10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인천	4,336	229	2,068	2	2,056	10	1,306	733	14	<ul><li>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li><li>클럽 관련(277명)</li></ul>
광주	1,997	127	1,601	9	1,586	6	128	141	7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대전	1,179	54	638	2	635	1	309	178	1	• <b>리치웨이 관련(210명)</b> • <b>시울 122명</b> ,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울산	1,001	89	714	16	694	4	123	75	2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세종	216	25	98	1	96	1	51	42	1	• <b>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b>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경기	22,821	1,476	8,980	29	8,872	79	7,605	4,760	127	<ul> <li>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li> <li>광주 139명, 전남 8명 등</li> <li>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li> </ul>
강원	1,837	72	1,037	17	1,019	1	473	255	14	• <b>시돌 도당한 임등인기식원 단한(1128)</b> • <b>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b>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충북	1,723	89	922	6	909	7	446	266	4	<ul> <li>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li> <li>충북과단중상단(전단)인성/병원관현472명</li> </ul>
충남	2,402	156	1,255	0	1,254	1	593	398	8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전북	1,135	105	798	1	796	1	121	111	7	<ul><li>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li><li>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li></ul>
전남	837	68	593	1	581	11	96	80	6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경북	3,209	148	2,253	565	1,687	1	480	328	8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경남	2,164	147	1,357	33	1,291	33	366	294	5	<ul><li>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3명)</li><li>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27명)</li></ul>
제주	561	33	358	0	357	1	96	74	0	<ul><li>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64명)</li><li>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79명)</li></ul>
검역	2,936	2,936	0	0	0	0	0	0	5	<ul><li>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li><li>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3명)</li></ul>
합계	87,681	6,940	41,291	5,214	35,763	314	23,023	16,427	357	<ul><li>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73명)</li><li>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li></ul>
입세	(%)	(7.9)	(47.1)	(5.9)	(40.8)	(0.4)	(26.3)	(18.7)	35/	<ul><li>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li><li>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li></ul>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3. 0시 기준)

	21.11.11.11	검사(건)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sup>1)</sup>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sup>2)</sup>	확진자(명)	
신규	-1	35,733	35,690	0	43	0	41	
서울	0	12,403	12,397	0	6	0	14	
경기	-1	21,209	21,172	0	37	0	26	
인천	0	2,121	2,121	0	0	0	1	
누계	102	2,057,642	2,035,853	4,235	17,506	48 <sup>3)</sup>	5,647	
서울	27	930,813	922,835	1,485	6,473	20	2,934	
경기	69	967,812	954,282	2,719	10,784	27	2,350	
인천	6	159,017	158,736	31	249	1	363	

<sup>1) (</sup>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7.~2.23.)

구 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6,650	71,122	75,496	81,977	42,689	32,191	79,268	459,393	8,530,32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47,077	42,647	42,778	44,639	20,709	17,804	43,535	259,189	6,472,679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29,573	28,475	32,718	37,338	21,980	14,387	35,733	200,204	2,057,642
신규 확진자 수(명)	621	621	561	448	416	332	357	3,356	87,681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92	71	80	75	59	44	41	462	5,647

<sup>1) (</sup>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sup>&</sup>lt;sup>2)</sup>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sup>&</sup>lt;sup>3)</sup> 양성 32건, 음성 16건

<sup>&</sup>lt;sup>2)</sup>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77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만위: 명>

구분	누적 투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TE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sup>1)</sup>
미국	27,773,047	493,976	70,973	2,082	1.78	8,390.65
인도	11,005,850	156,385	14,199	83	1.42	797.53
브라질	10,139,148	245,977	57,472	1,212	2.43	4,769.12
러시아	4,177,330	83,630	12,604	337	2.00	2,863.15
영국	4,115,513	120,580	9,834	215	2.93	6,061.14
프랑스	3,543,295	83,866	22,046	159	2.37	5,426.18
스페인2)	3,121,687	66,704	-	-	2.14	6,670.27
이탈리아	2,809,246	95,718	13,450	232	3.41	4,643.38
터키	2,638,422	28,060	6,546	77	1.06	3,129.80
독일	2,390,928	67,903	4,369	62	2.84	2,853.14
콜롬비아	2,222,018	58,685	5,017	174	2.64	4,365.46
아르헨티나	2,060,625	51,122	5,944	122	2.48	4,558.90
멕시코	2,038,276	179,797	7,785	832	8.82	1,581.28
폴란드	1,642,658	42,188	3,891	17	2.57	4,345.66
이란	1,574,012	59,483	7,931	74	3.78	1,873.82
남아프리카공화국	1,503,796	49,053	1,429	113	3.26	2,535.91
우크라이나	1,307,662	25,156	3,206	53	1.92	2,992.36
인도네시아	1,278,653	34,489	7,300	173	2.70	467.51
페루	1,275,899	44,877	6,376	187	3.52	3,866.36
체코	1,157,180	19,330	4,021	116	1.67	10,814.77
네덜란드	1,056,639	15,217	4,720	17	1.44	6,179.18
캐나다	843,301	21,630	2,715	54	2.56	2,236.87
칠레	799,460	20,042	3,615	68	2.51	4,185.65
포르투갈	797,525	15,962	1,186	65	2.00	7,818.87
루마니아	779,695	19,847	2,419	52	2.55	4,060.91
필리핀	561,169	12,088	1,881	20	2.15	512.02
방글라데시	543,351	8,349	327	7	1.54	329.90
일본	425,597	7,474	1,090	57	1.76	336.44
헝가리	405,646	14,347	2,623	48	3.54	4,181.92
네팔	273,431	2,061	80	0	0.75	939.63
미얀마	141,750	3,196	15	0	2.25	260.57
중국	89,852	4,636	21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5,929	1,458	44	0	1.70	5.97
우즈베키스탄	79,681	622	27	0	0.78	62.99
태국	25,504	83	89	0	0.33	36.54
베트남	2,383	35	15	0	1.47	2.45
대한민국	87,681	1,573	357	11	1.79	169.16

<sup>1)</sup>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붙임 3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u>-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u>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ul><li>▶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li><li>▶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li></ul>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노래연습장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u>▶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u>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무인카페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포함)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u>▶ 22시~역을 05시까지 문영 중단</u>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겨울스포스)설 포함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실외겨울스포츠시설	<ul><li>▶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li></ul>
(스키장 방장 눈쌀(장)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ul> <li>▶ 무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직 적용</li> <li>▶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독서실 제외)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직업훈련기관	<b>중단</b>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u>▶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u>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mark>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mark>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u> </u>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mark>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mark>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O라시 머디바 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 마스크 착용 ▶ 조기저 하기 스토
(300m² 이상)	<ul><li>▶ 주기적 환기·소독</li><li>③ 기타 다중이용시설</li></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숙박시설	<ul>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li>▶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li> <li>▶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li> </ul>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 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ul>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li>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li>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li> <li>▶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li> </ul>









# 붙임 4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li>▶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li> <li>★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li> <li>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li> </ul>
기타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li>▶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li> <li>▶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li> </ul>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u>▶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u>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ul> <li>▶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사설 <i>포</i> 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발(장)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u>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u>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li>▶ 마스크 작용</li></ul>
마트·상점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li>▶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li> <li>▶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ul>					









# 붙임 5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워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 · 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갂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첚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